

나.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구의회가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95.9.12.—9.19.(8일간)

2. 출석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4층)

3. 출석대상 : 94동관내도 설치 및 제작관련 전·현직 공무원

구 청 : 총무국장, 총무과장, 동정계장, 담당직원

동사무소 : 동장, 시민생활계장, 담당직원

4. 출석요구사유 :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전

1995. .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구의회가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및 보고사항 :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방침서, 계약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

2. 서류제출 및 보고일시 : '95.9.11. 12:00

3. 보고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1995. .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허약속이행
요구청원심사보고서

'95. 9.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상암동 34-78

성명 : 정만대외 71인

나. 소개의원 : 권오범의원

다. 접수일자 : '95.8.2.

라. 회부일자 : '95.8.2.

마. 상정일자 : 제32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

회(95.8.7)상정, 질의토론, 보류

제33회의회(임시회) 제6차위원

회(95.9.4.)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의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거주 주민들에 대하여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주관부서에서 공사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사유지를 사업당시 시가로 불하 건축허가 및 주택개량자금 융자도 가능하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약속과는 달리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현시가로 하고 불하대금도 5년 분할납부로 해야 한다는 주관부서의 답변에 해당 주민들은 사업시행 당시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 權五範議員)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는 '8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91년 동사업 제2지구로 고시되어 폭 25m 도로공사 및 폭 8m 소방도로가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당초 시작될 당시 주관부서에서는 동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즉시 불하계약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개량자금 융자도 가능하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약속과는 달리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현시가로 하고 대금도 5년분할로 한다는 답변은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한 바,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순리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청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본 청원은 인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조건과 지역개발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89년4월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90

- 년 10월 19일 상암제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92년 1월 29일 주민이 직접 시행하는 현재 개량사업 개선계획이 고시되어 93년 6월 23일 공공시설인 25m 간선도로와 4~8m 소방도로가 착공되어 일부 구간은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될 당시 주관 부서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 매각 대금을 동 사업 계획이 고시된 때의 시가로 불하하고 건축 허가는 물론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도 용자가 가능하다는 등 배부해 드린 청원서의 내용대로 약속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이를 신뢰한 청원인들은 당초 접행부서에도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의 대표 기관인 구의회에 청원하는 것으로
- 본 청원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거주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과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조례의 제 규정 등을 보면
 - 현지 개량사업의 경우 공공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은 서울시장의 행정권 한 위임사항으로 마포구청장이 시행하고 주택의 개량 등은 주민이 직접 시행 토록 하며,
 - 국·공유지 등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된 토지는 해당 연고권자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허가 전까지 매수하도록 하고 매각 대금의 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6 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마포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며, 매각 대금 납부부에 있어서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균등 분할 상환도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 개량 자금 도용자가 가능하고, 공공시설 사업으로 인한 철거 건물의 세입자에게는 주거 대책비 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대로 불하 대금을 동 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결정하여 불하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관 부서에서 했다면 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불 때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정의 신뢰성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요지(李天揆委員) : 당시 담당 공무원이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손시익) : 안내 패브릭을 만들어 홍보 배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를 불하하는 것은 현행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당시의 금액으로 해달라는 것은 여타 시유지를 불하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 질의요지(李麗杓委員) : 당시 담당 공무원이 약속한 문서화된 서류가 있는가?
- 답변요지(도시정비국장 손시익) : 문서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庚應鳳委員) : '91년 당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설정되었을 때 당시 공무원과의 약속 근거가 있는가?
- 답변요지(주택과장 염세동) : 약속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金英植委員) : 본 청의 주된 것이 담당 공무원의 약속여부이니 담당 공무원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답변요지(담당직원 장봉춘) :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 질의요지(李震杓委員) : 그렇다면 장기 상환(20년)이나 상환 기간 연장, 대출 용자

등은 가능합니까?

- 답변요지(주택과장 염세동) : 20년 장기 상환과 웅자방안등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심사결과의견 : 의견서 채택

10. 기타사항

○ 현장답사

- 일시 : '95.8.7. 16 : 00 ~ 17 : 00
- 내용 :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의 입장설명과 청원취지를 듣고 현장을 답사함.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 시유지 불하 약속이 행
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서

- 본 청원은 상암제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동사업이 확정된 때의 시가로 불하해 주고, 불하대금의 납부기간도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택개량자금의 웅자도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 본 청원의 내용중 불하대금을 동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하 가격 결정 방법등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불 때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의 우려도 염려되는 바이나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중 불하 대금의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4조에 규정된 “연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 검토히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하 신청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에 있어서도 복잡한 절차문제는 지적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청원인들이 불

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개량자금융자도 청원인들이 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암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등을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설득으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